

광주지방법원 2023. 3. 3 선고 2022가단52161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광식

피고1. A

2. B

변론 종결2022. 10. 14.

판결 선고2023. 3. 3.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70,006,070원 및 그중 19,256,887원에 대하여는 2022. 5. 16.부터, 50,581,435원에 대하여는 2022. 6. 29.부터 각 2022. 10. 14.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과 피고 A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 1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제2의 가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22. 1. 17. 접수 제392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위 각 신용보증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 C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

(단위: 원)

D	기업은행하남공단 지점중소기업자금 대출	2020-11-232021-11-222022-11-22	50,000,00050,000,000	피고A	-
E	C 은행봉선동 지점일반자금대출	2020-11-302025-11-28	20,000,00019,000,000	피고A	-
합계	70,000,00069,000,000				

나. 피고 A은 2022. 1. 29.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22. 5. 16. C은행에 19,256,887원(= 원금 19,000,000원 + 이자 256,887원)을, 2022. 6. 29. 중소기업은행에 50,581,435원(= 원금 50,000,000원 + 이자 581,435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또한 원고는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집행보전비용으로 824,540원을 지출하였고, 그중 656,792원(= 25,751원 + 25,751원 + 291,952원 + 313,338원)을 회수하여 현재 잔존 채권집행보전비용은 167,748원(= 824,540원 - 656,792원)이다.

다. 한편,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률은 2019. 4. 1.부터 현재까지 연 8%이다.

라. 피고 A은 2022. 1. 14.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22. 1. 17. 접수 제3926호로 채권최고액 금 100,000,000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B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위 처분행위가 이루어질 무렵 피고 A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그 가액은 23,847,913원 상당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광역시 서구, 광산세무서에 대한 각 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70,006,070원(= C은행 대위변제금 19,256,887원 + 중소기업은행 대위변제금 50,581,435원 + 잔존 채권집행보전비용 167,748원) 및 그중 C은행 대위변제금 19,256,887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22. 5. 16.부터, 중소기업은행 대위변제금 50,581,435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22. 6. 29.부터 각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2. 10. 14.까지는 연 8%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는 성립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2022. 1. 14. 당시 피고 A은 이미 사전구상금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상의 채무자의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지 불과 15일 만인 2022. 1. 29.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같은 날 원고의 사전구상권이 발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하여 사전구상금채무를 부담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사전구상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사전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인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개연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피고 A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인 피고 B에게 2022. 1. 14.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22. 1. 17.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 A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되며,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피고 A에게 2020. 6. 24. 5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피고 A의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피고 B이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행하여 살피건대, 피고 B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B이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피고 A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점에 관하여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수익자인 피고 B은 채무자인 피고 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춘화

별지